

건설 공사로 인한 환경 오염 피해 분쟁과 그 대응방안

정 혁 진

(환경부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 사무국장)

1. 머리말

최근들어 환경 오염 피해 분쟁 조정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발족한 '91년도에는 폐놀 사건 한 건만 신청되었으나, '92년도에는 4건, 그리고 '93년도에는 43건이 신청되어 팔목할만한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신청건뿐만 아니라, 신청금액도 '92년도에는 26억원에 불과했으나 '93년도에는 5백 3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오염 피해 분쟁 사건을 그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진동피해 분쟁사건이 '93년도 경우 전체 43건중 21건으로 약 50%를 점하고 있다.

이 21건의 건설공사의 내역을 살펴보면 아파트 건축, 상업용 빌딩 건설 및 택지 개발 등으로 인한 건축물 균열 피해가 12건으로 전체의 약 60%에 이르러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 <표 2>는 '93년도의 각종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오염 피해 분쟁 조정 신청을 그 유형별로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오염 피해 분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각종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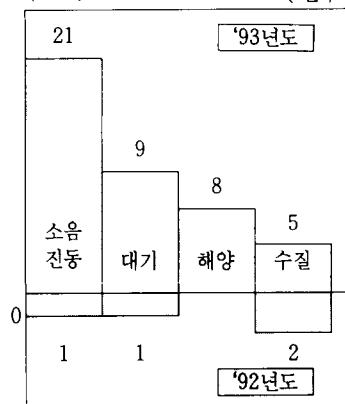
발 사업 시행자들이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건설공사 시공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안전 사고나 공기 단축 또는 부실 시공 방지에만 매달려 왔으나, 이제는 환경 오염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될 시점에 이르렀음을 알려주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2. 건설 공사와 환경 오염 피해

가. 건설 공사로 인한 환경 오염 피해 분쟁 증가 요인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생활의 질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강해지는 시점에서 환경 피해 분쟁이 증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과거 배가 고팠을 때는 참고 지냈던 범상한 일들도 이제는 그렇지가 않

<표 1> (건수)



고, 참기 어려운 공해 또는 환경 오염 피해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90년대에 들어오면서 헌법35조에 규정된 환경권 보장을 위한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제정이라든지, 이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팔목할만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진 것도 과거에 잠재돼 있던 환경오염 분쟁을 현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특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재정결정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시킨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증가 요인을 넘어서, 건설공사에 환경오염 피해 분쟁이 집중되게 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 환경오염 피해는 그 특성이 가해자나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이고, 배출된 오염 물질도 환경에 방출된 후 다양한 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대상에 피해를 끼쳤는지 여부를 쉽게 가시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어느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이 어느 특정인의 재산에 어떤 피해를 얼마나 주었는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어떤 건설공

(표 2) 환경 오염 별 피해사례

원 인	건수	피해 사례
교량 공사	1	◦ 양식(왕우렁이) 피해
아파트 건축, 빌딩, 택지 개발	12	◦ 건축물 균열 피해
고속도로 건설	2	◦ 양돈, 양어(자라), 건축물 피해
동토 매립	1	◦ 양어(가물치) 피해
시멘트 공장	1	◦ 양돈 피해
지하철 공사	2	◦ 건축물 균열 피해
공단 조성	2	◦ 양어(자라, 쏘가리, 메기) 피해
계	21	

사를 할 때 발생시키는 소음을 인근 주민이 귀로 듣고, 건물에 금이 가는 것을 눈으로 관찰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즉, 건설 공사가 일으키는 환경 오염 피해는 가시적이기 때문에 분쟁 조정 신청이 그만큼 용이해지는 것이다. 또 한가지 이유로서는 '93년도의 경우 서울 및 대도시 지역의 아파트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이 많이 시행되었는데 재개발 지역 인근 주민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분쟁 발생을 촉진한 것으로 보인다.

나. 건설 공사비와 환경 비용

대부분의 건설 공사비는 노무비 및 자재비 등 직접 경비와 공사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대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이 전통적인 공사 원가 산정 방식이며, 여기에 이윤을 붙여서 공사 발주에 응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건설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 비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건설공사 프로젝트 비용에 환경 비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공사 발주처나 공사를 맡아 시행하는 건설업자가 모두 건설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환경 오염 문제에는 눈을 감아버리고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자세라고밖에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건설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면지 공해,

소음 공해, 진동으로 인한 건물 균열 등 피해는 발주자나 시공업자가 당하는 피해가 아니고, 일반 시민이 입는 피해였기 때문이다.

건설 공사등 개발 사업으로 인한 환경 비용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건설 공사 시공전에 또는 시공 과정에서 환경 오염 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 비용이다. 시공전의 환경 비용에서는 환경 영향 평가 비용을 들 수 있다. 환경 영향 평가 비용이란, 건설 공사 프로젝트를 만들 당시, 그 건설 공사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비용을 말한다. 예컨대 골프장

건설 프로젝트를 만들 때 골프장 자체의 건설 비용뿐만 아니라, 골프장 잔디 농약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저류조, 조정지 등의 설치 비용을 말한다. 환경 영향 평가는 종전 환경영작기본법에서 다루어 왔는데, 환경 영향 평가의 중요성이 국회 및 언론에서 비등하여 1993년 6월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하고, 동 12월 시행령이 마련되어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은 반드시 환경영향 평가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 공사의 경우는 시공자가 동 건설 공사의

환경 영향 평가서를 작성하여, 동 건설 공사로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거친 후 사업 승인을 요청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시·도지사 등 승인 기관에서는 영향 평가에 대하여 환경처에 협의 요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환경처가 협의해 준 내용을 승인 요청한 건설 공사 사업 계획에 포함시킨 후 승인을 해주도록 종전의 법보다 훨씬 강화 되어있다. 이에따라, 금년부터 시행되는 건설 공사부터는 환경 비용이 프로젝트 비용에 원천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시공 과정의 환경 비용 예로서는 야산을 깎아 공단이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때, 대개 화약을 써서 발파하는 공법을 많이 써왔으나 최근 화약을 쓰지 않고 무진동 공법을 개발하여 이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물론 무진동 공법을 쓸 때는 화약을 쓰는 발파 공법보다 비용이 많이 듈다. 따라서, 그 차액은 환경 비용이라고 부를 수 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건설 공사장의 흙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에 방진망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공사장 출입 차량의 세륜(洗輪) 비용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종류의 환경 비용은 사전 예방 비용과는 달리 사후에 환경 오염 피해가 이미 발생하고 난 후, 이를 회복시키는 비용을 말한다. 과거 '60, '70년대에는 이러한 환경 오염 피해에 대하여 정부나 주민 모두 관대하였다. 정부는 경제 성장 일변도 정책 때문에 이러한 공해 문제는 가급적 조용히 지나가도록 하였다. 국민들도 당장의 빵 문제 해결이 급했으므로

환경 오염 피해를 가지고 사회적 관심을 끌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부터는 생활의 질 및 쾌적한 환경이 사회의 최우선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1990년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이 제정되고, 1991년 7월 피해 분쟁을 전담 조정하는 기구로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발족한 이래 환경 오염 피해를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제 개발 사업 주체는 이러한 사후적 환경 비용의 부담에서 더이상 면책될 수 없는 새로운 상황에 끌려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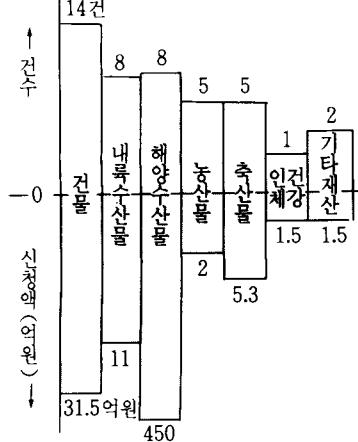
다. 환경 오염 피해의 유형 및 피해 인정 범위

환경 오염 피해 분쟁이 일어나 피해자로부터 오염 피해 배상이 신청된 배상 요구액은 '93년도의 경우 총 5백3억원이며 피해 분야별 배상신청액 및 배상 신청 건수는 다음 표와 같다.

위 (표3)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환경 오염 피해는 그 내용이 매우 다양하며, 해양 수산물 피해가 분쟁 건수는 적지만 그 피해 규모는 제일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서해 연안에 방조제 건설 및 매립·개간 사업으로

(표3) '93년도 환경 오염 피해 분야별

배상 신청액 및 건수



많은 공단이 들어서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인근 연해의 생태계 변화 및 양식어장의 환경 오염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환경 오염 피해로 그 배상을 신청하는 피해자들의 피해 분야별, 그리고 배상액 요구 규모별 분포는 어떠한지 '93년도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보면 다음 <표4>와 같다.

<표4>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1~5억원 규모가 14건으로 36.8%를 점하고 있으며, 1억원 미만이 34.2%, 그리고 5억원 이상이 29%를 차지하고 있다. 5백만원 이하의 경미한 것이 2건, 그리고 50억 이상의 대규모 배상을 신청한 경우도 2건 있으나, 이런 경우는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 오염 피해의 인정 범위는 일반적으로 재산상 물질적 피해를 말한다. 예컨대, 발파 공사로 인하여 건물에 균열 피해를 입혔으면 이를 원상 회복시켜주는 비용, 또는 공장 폐수로 인하여 해태 양식장이 입은 손실 등이 1차적으로 피해 배상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적 피해에는 인체 건강에 대한 의료비도 포함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물질적 피해 이외에 정신적 피해도 포함되는가 여부이다.

정신적 피해라 함은 재산 이외의 손해, 즉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생기는 정신적 고통을 말하며, 그 배상은 보통 위자료의 형태를 취한다.

위자료는 재산적 손해와 같이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판단은 사회 통념과 사건을 담당한 위원들의 양식에 맡겨질 수밖에 없다. 위자료액의 구체적 산정 방법은 당사자 쌍방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자산 상태, 가해의 동기, 모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공평의 관념에 따라 정해진다.

환경 오염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판례는 '88년도 서울 민사지법의 진폐증 피해 사건으로 '91년 대법원 판결에서 위자료 5백만원을 인정한 것이 처음이며, 최근들어 환경 오염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93년 11월 금호동 재개발 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 사건의 재정 결정을 분기점으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는 조정 및 재정 결정을 내리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피해 배상 신청에 대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

<표4> '93년도 피해 배상액 피해 분야별·신청 규모별 분포

피해분야 신청금액	인체 건강	건물	축산물	농산물	해양 수산물	내륙 수산물	기타 재산	계
5백만이하					2			2
5~10백만						1		1
10~30백만		1			1			2
30~50백만		1(1)				2		3(1)
5천만~1억	1		1(1)	2		1		5(1)
1~5억	1	5(1)	3	1	1	2	1	14(1)
5~10억	1	1(1)				2(1)		4(2)
10~20억	1	1						2
20~50억					3			3
50억이상					2(1)			2(1)
계	3	10(3)	4(1)	6	6(1)	8(1)	1	38(6)

주 : ()는 병합처리건수

회가 실제로 조정 또는 재정 결정을 내린 금액은 어떠한가를 알기 위하여 '93년도 동 위원회 처리 실적을 표로 정리해 보면 <표 5>와 같다. 요구액에 대한 배상 결정한 것이 3건으로 13.5%, 30% 이상 배상 결정한 것은 4건으로 18%, 30% 미만 배상 결정은 12건으로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각 및 자진 취하가 3건으로 13.5%를 점하고 있다. 이것은 환경 오염 피해는 그 인과 관계를 결정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인과 관계를 인정해도 배상액 수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의 부족으로 피해자가 느끼는 주관적 피해와 위원회가 판단하는 객관적 피해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라. 건설 공사와 환경 오염 피해 배상 책임

건설 공사 등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자가 환경 영향 평가를 받고 방지 시설을 설치, 가동하여 법에서 정하는 배출 허용 기준 이내로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였을 때도 환경 오염 피해의 배상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면 기업으로서의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법

상 의무 이행을 다한 것이기 때문에 환경 오염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먼저, 환경 영향 평가란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 분석하여 환경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서(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평가 당시의 상황과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의 불확실한 환경 변화 상태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 오염 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 기능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환경 영향 평가는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아니고, 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하는 것으로서

개발 사업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환경 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환경 영향 평가를 받은 사업도 환경 오염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배출 허용 기준이란 환경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설정해 놓은 오염 물질 배출 규제 기준으로서 환경 오염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기준이 아니며,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와 제

31조에서 오염 원인자의 비용 부담 책임과 무과실 책임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환경 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배출 허용 기준의 준수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공해 소송에 있어서 배상 책임 인정 기준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보면 배상 책임의 성립은 오염 행위와 피해 사실 사이의 실질적인 인과 관계에 의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여부와는 별개로 보고 있다(대기 오염으로 인한 관상수 피해에 대한 대법원 판례; '91.7.23 및 작업장에서 방출되는 중금속으로 인한 인체피해에 대한 민사항소사건, '90.1.12).

<환경정책기본법상 관련 규정>

제 7조 (오염 원인자의 비용 부담 책임)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환경 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1조 (환경 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① 사업장등에서 발생되는 환경 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 등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사업장등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업자는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표 5>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또는 재정 결정액 규모별 분포

피해분야 신청금액	인체 건강	건물	축산물	농산물	해양 수산물	내륙 수산물	기타 재산	계
5백만 이하	1	1(1)		3		1		6(1)
5~10백만	1							1
10~30백만	1	3	1(1)			2		7(1)
30~50백만		1				1	1	3
5천만~1억			1					1
1~5억		2(1)	1					3(1)
5~10억					2(1)			2(1)
10~20억					1			1
20~50억								
50억 이상								
계	3	7(2)	3(1)	3	3(1)	4	1	24(4)

주 : ()는 병합 처리 건수

아울러 현행 수질·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 명령, 조업 정지 명령, 배출 부과금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며, 불복시 행정소송 제기를 하여야 하지만, 분쟁 조정법상의 배상 책임은 배출 허용 기준의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사실과 오염 행위의 인과 관

계에 의하여 결정되는 순수한 민사상의 문제이므로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여부와 분쟁조정법상 배상 책임은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체가 환경 영향 평가를 받고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한 경우라도 환경 오염 피해를 유발시킨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하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이 원칙에 따라 조정 및 재정 결정을 내리고 있다.

마. 건설 공사와 환경 오염 분쟁 대응 방안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건설 공사등 개발 사업 추진시 건설 사업자는 과거의 건설 프로젝트에 이제는 환경 프로젝트를 추가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건설 프로젝트와 환경 프로젝트가 통합된 프로젝트를 가지고 경쟁 입찰에 나가야 할 것이다. 과거처럼 환경 오염으로 인한 비용을 기업 내부 비용이 아닌 외부 비용으로 치부하고, 이러한 사회 비용은 피해를 입는 주민이 부담하거나 정부가 구제해 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더이상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하에 환경 오염의 사회 비용을 내재화하는 각종 조치들을 사전에 취함으로써 건설 공사의 효과적 추진 및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환경 오염 발생의 사전 예방 또는 감소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는 건설 공사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환경영향 평가서 작성시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 비용이 지나치게 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때에는 사업의 수익성이 낮아져 사업 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회사의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건설 공사 착수 이후 환경 오염 피해 분쟁에 휩쓸려 공기가 무한정 지연된다든지, 또는 건설공사 완료후에도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 배상액이 대규모일 때는 그러한 건설 공사는 아예 시작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다. 따라서, 환경 영향 평가서는 정직하게 작성하여, 건설 공사로 영향을 받을 인근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을 사전에 반영시켜 주면, 사후에 환경 피해로 인한 분쟁의 소지를 원칙적으로 없애주고 환경 오염 피해 배상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결국 기업의 이익이 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환경 영향 평가 과정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들을 가능한한 사업 계획에 반영시켜야 된다. 여기서 지적된 모든 사항들이란 환경 오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감소시키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말하며, 이것이 앞서 언급한 환경 계획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환경 비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컨대 환경 친화적인 공법을 채택하고 환경오염 저감 또는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비용, 그리고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최소한의 환경 오염 피해에 대하여는 주민들에게 마을회관을 지어준다든지, 보상을 해준다든지 하는 주민 보상 대책 등의 모든 프로그램이 이러한 환경 계획의 범주에 포함될 것이다.

끝으로 환경 분쟁에 대비하여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는 건설공사 전후의 환경 영향을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증거 자료 수집에 노력할 필요가 있

다.

일단, 환경 오염 피해 분쟁이 일어나면 피해자와 가해자는 피해 원인이나 배상 규모를 둘러싸고 상호 대립하게 되는데, 결국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많이 확보하는 측이 유리한 판결을 받게된다.

대개의 경우 이미 건설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충분한 증거나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 분쟁 조정 또는 재정 신청을 해오는 사례를 많이 경험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서는 일단 사건이 접수되면, 심사관이 피해 현장을 면밀히 조사하여 중립적 입장에서 조정 또는 재정결정을 내리지만 피해가 일어나기전의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객관적인 관계로 결정이 어려워진다.

특히,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헌법 35조 1항은 환경권 보장을 선언하고 있고, 환경정책기본법 31조는 환경 오염 피해의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 오염 피해가 있으면 가해자의 고의·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배상 책임을 진다. 또한 환경 오염 피해의 인과 관계 규명에 있어서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절대적 증거가 없어도 개연성만 인정되면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최근의 판례 경향이므로, 건설 사업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여건을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 공사전부터 분쟁 소지가 있는 건물등 피해 대상에 대하여 사전 활용등 공사 전후 효과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수집하는데 별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사 과정에서 환경 오염 피해 신고를

받거나 이를 인지했을 경우는 즉시 현장에 가서 면밀히 조사 및 자료 수집을 하여 후일의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3. 사례로 본 건설 공사 환경 오염 피해 분쟁

가. 총괄

건설 공사 환경 분쟁의 대표적 사례로서, D건설이 '90년 6월부터 3년에 걸쳐 주거 지역에서 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발파 작업 등으로 주민들의 집에 금이 가게하고 소음·진동으로 임대 수입을 못올리게 했으므로 D건설은 피해자 남창현씨 등 23명에게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환경처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재정 결정을 내린 사례를 소개한다.

나. 사건의 개요

신청인 남창현(서울 성동구 금호동 3가 1362-46) 외 22인은 서울 성동구 금호동 3가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피신청인인 D건설이 90년 6월부터 금호 제5-1지구 재개발 아파트 공사에 착수, 90년 8월 6일부터 화약 시험발파 및 발파 작업을 개시하면서 소음·진동을 일으키자 90년 11월부터 인근 주민들과 함께 대통령비서실, 감사원 등 관계 기관에 공사 소음·진동 대책을 요구하는 수십회의 집단 민원을 제출하였다.

이때, 피신청인은 주변 주택 약 30가옥에 대하여 보수 공사를 해주었고, 91년 5월부터는 일부 무진동 공법을 이용하여 암반 파쇄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

그후로도 피해가 계속되자 두산건설은 화약 장약량 한도 설정에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91년 10월 26일에 제2차 화약 시

험 발파를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발파 시험을 수정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후 92년 11월 6일 발파공사는 완료되었다. 이후 피해 배상 범위에 대하여 양당사자간의 합의가 어려워지자 남창현외 22인은 93년 6월 25일자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신청을 냈다.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90년부터 신청인 주택 인근에서 금호 제5-1구역 재개발 아파트를 신축함으로써 공사시 발생한 소음·진동 및 분진으로 주택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하며 주택 피해 보상비 3억 7천여 만원 등 총 5억 7천여 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타 피해는 세탁비, 매식비, 독서실 이용료, 가전제품 고장, 공사 정지 가치분 신청비, 본 재정 신청 수수료,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비, 임대료 손실, 기타 경비 등으로 되어있다.

피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발파 작업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시험 발파 결과에 따

라 인근 주택에 피해가 없도록 화약을 적게 사용했으며, 암반 굴착 공사 전후 인근 주택의 같은 위치를 촬영하여 비교한 결과 추가 균열이 없었음으로 피신청인의 공사 진동에 의한 주택 피해 주장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신청인들 주택은 대부분 17년 이상 경과되어 매우 낡았으며 기초도 대체로 부실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택의 균열 원인은 주택 노후화로 인한 자연 파손과 지반이 주택 자중을 견디지 못하고 침하되어 발생한 결과라는 것이다.

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 결정 내용

위와 같은 양당사자의 대립되는 주장에 대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D건설은 남창현 등 22명의 신청인들에게 금 1억 6천 9백 14만원을 지급하라는 재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 이와 같은 재정 결정을 내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논리적 배경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동 위원회는 과연 D건설이 신청인들에게 환경 오염피해를 끼쳤는지를 결정하는 피해와의 인과 관계를 인정한다면 그 배상액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근거 및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1) 건설 공사와 피해와의 인과 관계 결정

첫번째로 발파 진동에 의한 주택 균열 피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의 화약 사용 기록, 당사자 진술 및 화약 발파시 참관 경찰관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피신청인은 3동 주변에서 지발당 화약을 최고 0.39kg까지 사용했으며 15동 주

변에서는 1.37kg, 16동 주변에서는 1.62kg, 정구장 주변에서는 1.5kg까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근거로 총포화약안전협회가 시험 발파시 제시한 진동 예측식을 적용하여 진동을 예측한 결과 신청인들의 주택은 모두 최고 진동 속도가 0.3cm/sec를 초과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이는 진동 영향권 범위내에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판단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유사 사례의 선례가 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 영향권밖에 있을 때에는 설령 피해가 있을 경우도 환

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피해로 간주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또한 피신청인이 제시한 발파 작업 전·후의 주택 균열 사진을 비교한 결과 주택 균열이 확대되었음이 확인되었고, 현지 조사 결과도 균열 정도가 일반 주택보다 매우 심하고 주택이 기울거나 지반이 일부 침하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되어 발파 진동과 주택 균열 피해와의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두번째로, 기타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는 신청인 김종목 등 4인이 주장한 임대료 하락 등에 의한 임대료 손실 피해 주장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누수 등으로 주택을 임대치 못하거나 임대료가 하락한 사례가 확인되었고, 신청인이 실제 임대한 임대료가 인근 소음·

〈표 6〉 신청인의 피해배상요구내역

(단위 : 천원)

계	건물피해	정신적 피해	기타피해	비고
579,240 (23)	374,400 (20)	96,500 (20)	108,340 (6)	신청인중 3인은 세입자임

주 : ()은 신청인 수

〈표 7〉 개인별 피해배상액 산정내역

(단위 : 천원)

신청인명	계		건물피해		정신적 피해		임대료손실		독서실이용료등		기타피해		비고
	요구	배상	요구	배상	요구	배상	요구	배상	요구	배상	요구	배상	
계	579,240	169,141	374,400	122,032	96,500	34,500	21,120	11,609	3,960	1,000	83,260	—	
남창현	45,300	14,870	28,700	11,370	3,000	3,000	—	—	1,400	500	12,200	—	
정원채	29,250	15,436	12,650	10,593	3,500	3,000	3,600	1,843	—	—	9,500	—	
김정숙	37,000	12,768	25,200	7,768	3,000	3,000	2,000	2,000	—	—	6,800	—	
홍현표	15,500	12,359	15,500	12,359	—	—	—	—	—	—	—	—	
김완섭	15,500	4,335	12,000	3,335	1,500	1,000	—	—	—	—	1,500	—	
임순파	25,000	15,400	15,850	12,400	5,500	3,000	—	—	—	—	3,650	—	
구용덕	5,000	1,500	—	—	2,500	1,500	—	—	—	—	2,500	—	
김한준	5,000	1,500	—	—	3,000	1,500	—	—	—	—	2,000	—	
이점진	5,000	1,500	—	—	2,500	1,500	—	—	—	—	2,500	—	
김종목	68,880	15,653	40,000	9,887	5,000	—	11,250	5,765	—	—	12,360	—	
하영숙	79,810	15,387	38,000	9,887	5,000	3,000	4,000	2,000	2,560	500	30,250	—	
강동수	62,500	5,000	40,000	4,000	22,500	1,000	—	—	—	—	—	—	
박춘길	20,000	1,800	15,000	800	5,000	1,000	—	—	—	—	—	—	
장유금	20,000	4,400	15,000	1,400	5,000	3,000	—	—	—	—	—	—	
최귀연	10,000	1,374	10,000	1,374	—	—	—	—	—	—	—	—	
이정자	15,000	3,520	12,000	2,520	3,000	1,000	—	—	—	—	—	—	
강태삼	40,000	10,091	31,000	9,091	9,000	1,000	—	—	—	—	—	—	
지부천	10,000	4,528	6,500	3,528	3,500	1,000	—	—	—	—	—	—	
박희배	10,000	3,600	7,000	2,600	3,000	1,000	—	—	—	—	—	—	
박하식	11,000	5,000	8,000	4,000	3,000	1,000	—	—	—	—	—	—	
고갑수	20,000	10,887	17,000	9,887	3,000	1,000	—	—	—	—	—	—	
이기복	10,000	1,820	10,000	1,820	—	—	—	—	—	—	—	—	
이용운	20,000	6,413	15,000	3,413	5,000	3,000	—	—	—	—	—	—	

진동피해가 없는 유사 주택의 임대료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으로 공사 발생 소음·진동과 임대료 손실과의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신청인 남창현, 하영숙이 주장하는 공사 소음·진동으로 자녀들이 독서실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신청인 주택에서의 공사 소음도는 최고 98dB로 추정되어 이는 주거지역 환경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므로 공사장 발생 소음과 방학 기간 중 신청인 자녀들의 독서실 이용 사실과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인 남창현 등 10인이 주장하는 생활 환경 변화에 따른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 전파 방해에 의한 TV 시청장애 피해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규정에 의한 환경 오염 피해에 해당되지 않고 가전제품 고장 등 기타 물질적 피해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인과 관계를 인정치 않고 있다.

세번째로, 소음·진동에 의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신청인 남창현 등 20인이 주장한 공사장 발생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신청인 주택들이 아파트 공사장으로부터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신청인 주택에서의 소음 수준 추정 결과 98dB에 달하여 주거 지역 환경기준 50dB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다는 점과 이러한 소음·진동이 3년에 걸쳐 장기간 계속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공사장 발생 소음·진동으로 신청인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상 인정된다는 것이다.

2) 건설공사로 인한 피해 배상

범위 결정

첫째, 건물피해에 대하여는 건물의 피해정도가 심각한 남창현 등 18인 소유주택은 부분 개축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한국감정원 발행 건물 신축 단가표의 건평당 신축 가격, 건물 실평수 및 건물 노후도를 고려하여 개축비를 산정하되 건물의 피해 정도에 따라 개축률은 20~50%로 차등 적용하여 건물 피해 배상액을 산정하고 있다. 또한 건물 피해 정도가 비교적 적은 최귀연, 김완섭주택은 부분 보수 공사를 실시토록 하되 보수공사비 산정에 필요한 재료와 노무비는 월간 물가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택을 기보수해 주었을 경우 해당 신청인의 주택 균열 피해 배상에서 기보수해 준 금액은 감해야 할 것이나 피신청인이 제시한 강동수, 하영숙 신청인의 전기 온돌장치 설치비는 균열된 방바닥을 보수해준 사고 방지 장치 설치비로 볼 수 있으므로 피해액 산정시 이를 고려치 않고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건물 피해 배상액은 총 1억 2천2백3만2천원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다.

둘째, 기타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는 신청인 김종목 4인이 주장하는 임대료 손실에 따른 피해배상액은 피해가 없는 인근 유사주택과 실제 신청인들이 임대한 월세 차액 및 보증금 축소에 따른

이자 소득 손실의 합계로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료 손실 피해 배상액은 총 1천백6만9천원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다. 또한 독서실 이용에 따른 피해액은 월간 독서실 이용료 5만원에 방학 기간 및 자녀수, 피해 주장 연수를 곱하여 산정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할 독서실 이용에 따른 피해액은 총 1백만원이 된다는 것이고, 기타 세탁비 및 청소비 증가 등은 인과 관계가 인정되나 수인 한계내에 있다할 것이므로 기타 물질적 피해는 인과 관계를 인정치 않고 있다.

셋째, 소음·진동에 의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신청인 주택과 공사장과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공사장과 접한 주택 소유자는 3백만원 기타 주택 소유자는 1백만원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다. 다만, 공사 이전부터 동 지역에 거주해온 세입자 구용덕, 김한준, 이점진은 이사 등 대체 수단이 있었음을 고려하여 주택 소유자의 50%만 지급토록 하고 공사 기간 중 분쟁 지역에 거주치 아니한 주택 소유자 김종목의 위자료는 인정치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총 3천4백50만원이 된다. 이상을 근거로하여 전체 배상금액을 1억6천9백14만1천원으로 결정하고 있다. ◎

알림

방재와보험 '94봄호

이번 방재와보험 '94봄호(61호)부터는 면수의 조정에 따라 방재퀴즈를 중단합니다. 그 동안 "방재와보험"지의 방재퀴즈에 응모해주신 독자여러분과 퀴즈 상품을 제공해주신 로렌스시계공업(주), 게코전자(주), 삼우금속공업(주)에 감사드립니다.